
중동 상황 대응

관세행정 종합지원 방안

2026. 3.

관세청
심사국

순 서

I . 추진 배경	1
II . 관세행정 종합지원 방안	2
참고 1. 지원사항 세부내용	3
참고 2. 중동 상황 수출입 통계	6
참고 3. 중동 상황 관세행정 지원 절차	7

I. 추진 배경

- [현황] 한국 에너지 수입의 약 71%*를 중동에 의존, 중동 지역 수출은 전체 3% 수준**으로 미미

* '2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입 753억불 중 중동 수입액 533억불(71.0%)

** '2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 7,093억불 중 對중동 수출 204억불(2.87%)

- 중동상황 발발 2.28.부터 3.6.까지 對중동 일일 수출입 동향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수출·수입 모두 실질적인 변화는 확인 곤란
(단, 분석대상 기간이 짧아 상황 장기화 시 추가 동향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문제점] 중동지역 허브공항 기능 마비 및 호르무즈 해협 통과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해 수출입물류 지연, 비용·가격 급등이 예상됨

- (수출) 중동 수출, 중동 경유 수출물품이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유턴하는 사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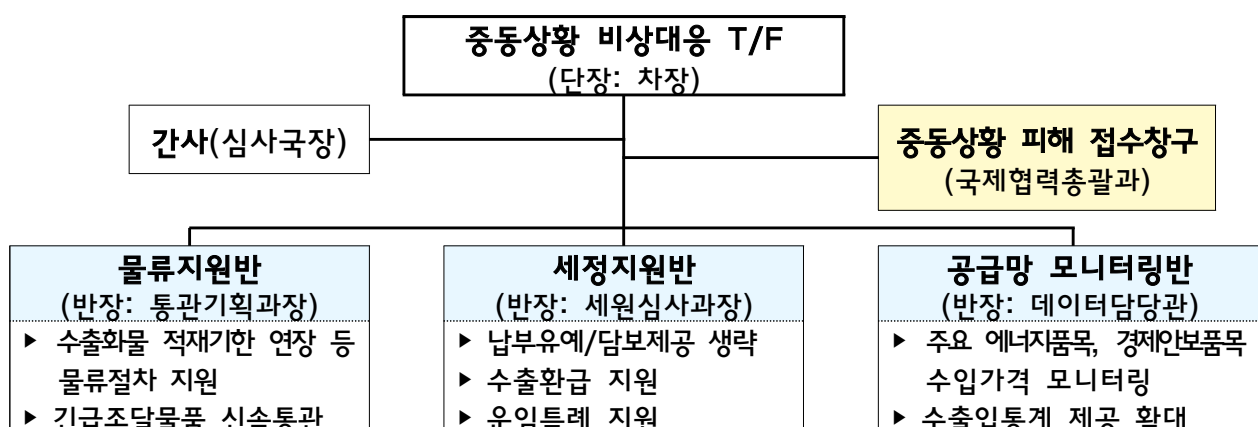
※ 중동행 항공편 수출 취하 1건, 중동 경유 항공편 수출 취하 3건 발생(3.6.일 기준)

-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중동 수출화물 물류비용 상승도 불가피

- (수입)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유 등 연료 자원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각국의 핵심자원 유보·비축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우려

- [관세청] 수출입기업 피해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마련 및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 구성

* 중동지역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추진



👉 **직접 피해 수출입업체 + 간접피해 기업까지 종합 지원**

II. 관세행정 종합지원방안

□ 지원대상 : 중동상황 관련 직접피해 + 간접피해 기업

- ① (직접피해) 중동 지역*과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대금결제 악화 등 자금경색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 중동(20국) : 아랍에미리트 연합,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 ② (간접피해) 중동상황의 여파에 따른 공급망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기업 경영에 피해를 입은 업체

□ 지원방안

지원 분야	지원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담보제공 생략	-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하여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최대 6회)허용으로 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② 수출환급 지원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무서류(Paperless) 심사 및 수출이행기간 연장 승인을 통한 신속 환급 및 수출지원
③ 운임특례 지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다른 항로로 우회하거나,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④ 통관 지원	- 긴급조달 물품¹⁾ 신속통관 지원²⁾으로 국내기업의 피해 예방 - 해당 지역 수출화물에 대한 적재기한 연장 적극 승인
⑤ 정보데이터 지원	- 원유 등 7개 에너지 품목의 수입가격 모니터링 정보 제공 - 경제안보 품목 수입량·수입단가 분석을 통한 공급망 위기 점검 - 중동을 포함한 국가별·품목별 수출입 통계 제공범위 확대

1) 원자재 수급난 발생 또는 중동으로 입항하지 못하고 유턴하는 수출화물

2) 24시간 통관지원, 수입신고 서류제출 및 검사 최소화, 긴급통관 건 최우선 처리

□ 향후 계획

- 관세행정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단장: 관세청 차장)’ 신설·운영
-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접수·상담창구 개설
 -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 주간 피해현황 및 지원실적 점검·피드백

참고1

지원방안 세부 내용

1. 납기연장·분할 납부·담보제공 생략 (즉시 시행)

- (대 상) 중동상황 관련 직·간접피해를 입었다고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에서 확인한 중동 지역 수입기업 중,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구분	제외 요건
업체	①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발생 기업 ②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납부기한 경과 30일내 납부 시 제외) ③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
물품	④ 수입신고 물품이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사전세액심사 대상) 제5호 (가격변동이 큰) 물품

- (내 용)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하여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지원*

* 업체 상황(파산선고, 법인해산 등)으로 관세 채권 확보가 우려되는 경우 담보 제공 요청 가능

원칙	중동상황 관련 특별지원
• 납세신고 수리일·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관세 납부	• 최대 1년까지 납기 연장 • 최대 1년 범위 내 분납 허용
•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원칙	•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 (절 차) 납기연장 등 신청(별지서식 이용) 및 사후관리(취소 등)는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처리

2. 수출환급 지원 (즉시 시행)

- (대 상) 중동상황 관련 직·간접피해를 입었다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확인한 중동 지역 수출기업으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내 용)

- [신속 지급] 환급금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 및 지급하고 사후에 심사(先지급 後심사)
- [무서류 심사] 환급 사전심사 또는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환급 신청 건을 P/L(Paperless)로 전환*

* [제외] 과다환급 우려가 높은 조정고시 대상 물품

- 〔수출이행기간 등 연장〕 중동상황으로 인해 환특법상 이행기간 내에 수출·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수출이행기간 등 연장 승인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의 '불가피·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구분	수출이행기간 연장	국내거래기간 연장
대상품목	• 플랜트 수출 물품* *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 제한 없음
이행기간	• 2년 → 3년	• 1년 → 1년 6월
승인절차	• 신청서, 입증자료 제출 → 세관장 심사 → 수출이행기간(국내거래기간) 연장 승인	

3. 운임특례 지원 (4월 중 시행, 단 3월 수입분 소급 적용)

- (대 상) 호르무즈 해협 통행 불가로 다른 항로를 이용하거나 대체 항공편을 이용함에 따라 운임이 증가한 기업
- (내 용) 통상적인 선박 운임을 적용하여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 및 시달
※ 중동상황 발발 이후 영향을 받은 수입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 예정

4. 통관 지원 (즉시 시행)

① 긴급조달물품 신속통관 지원

- (대 상) 중동 상황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는 긴급조달물품* 및 해당 지역으로 수출 후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화물
* 국내 수급난 발생물품 또는 피해업체가 반입하는 긴급조달물품
- (내 용) 긴급조달물품, 유턴화물 등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 수입 신고 서류제출 및 검사 최소화, 대상화물 최우선 처리
 - 원유·천연가스 등 국제정세로 인해 물가 급등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국내반입 시 서류제출, 검사선별 최소화로 신속통관 지원
* (중동) 원유, 천연가스 / (유럽) 반도체 제조설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 수출 후 국내 유턴화물에 대해 국내 반입시 간이한 심사*로 신속 통관하고, 재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즉시 반송신고 수리
* 유럽·중동 지역 수출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 후 신속통관 조치(증빙자료 미징구)

② 중동 수출기업 수출신고 후 선적기한 연장

- (대 상)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는 화물
- (내 용) 기간內 적재 미이행에 따라 수출기업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적재기간 도래 건에 대해 기간연장 신청 등 사전안내**
 -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277⑥)
 - ** 유니패스에서 '수출 미선적'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하여 적재기한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 해소

5. 정보데이터 지원 (즉시 시행)

- ① 에너지 품목 수입가격 모니터링 관계 정부 부처에 제공
- ②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조기 점검 후 수입 변동성 지표 및 위험도를 관계 정부 부처에 전파
- ③ 일일 수출입실적 점검 및 대통령실 등 관계 정부 부처에 제공

참고2

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통계

□ 중동지역 수출입현황

※ 중동상황은 2.28.일 발생으로 '26.2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실적 차이는 미미

○ 수출액

(단위 : 억 달러, %)

권역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비중
중동* (20국)	23년	15	17	18	16	16	16	15	14	14	15	14	18	187	3.0
	24년	17	14	16	17	15	17	23	14	16	15	16	17	197	2.9
	25년	13	17	18	17	14	20	15	14	19	15	22	22	204	2.9
	26년	16	17	0	-	-	-	-	-	-	-	-	-	33	2.5

※ 2025년 기준, 對중동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9% 수준

* 중동(20국) :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 수입액

(단위 : 억 달러, %)

권역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비중
중동	23년	86	87	88	73	74	66	63	78	87	78	79	80	938	14.6
	24년	82	75	80	86	81	77	73	82	72	76	74	74	932	14.7
	25년	82	68	73	63	62	57	66	76	64	64	51	54	779	12.3
	26년	65	58	2	-	-	-	-	-	-	-	-	-	125	11.4

※ 2025년 기준 對중동 수입은 약 12.3%이나,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입

참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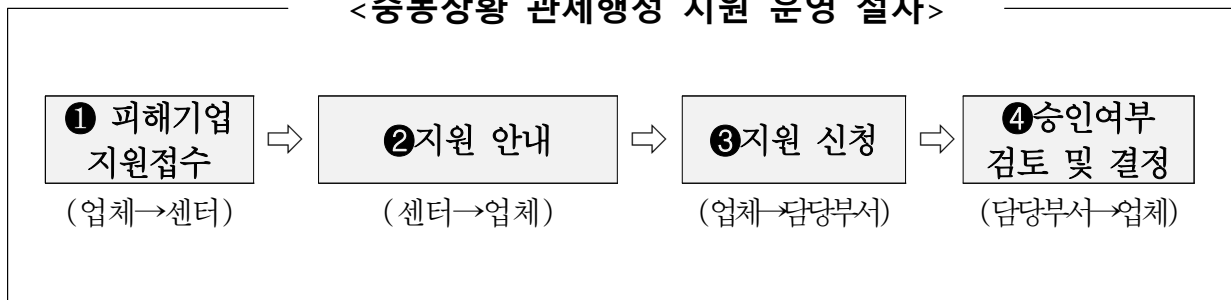
중동상황 관세행정 지원 절차

□ 지원대상

- 중동상황에 따른 피해 지원 요청 업체

□ 운영절차

<중동상황 관세행정 지원 운영 절차>



- ① (피해기업)**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지원 접수(유선,전자우편)

※ 별도 접수 양식 없음

- ② (센터)** 질의사항 답변 또는 피해기업의 지원요청 내용에 따른 부서 연결

구 분	지원분야	담당부서
세정지원	■ 납기연장·분할납부·담보제공 생략	통관지 납세지원 부서
	■ 수출환급 지원	관할지 환급 부서
	■ 운임특례 지원	미정
물류지원	■ 통관 지원	통관지 수출입 부서

- ③ (피해기업)** 연결받은 담당부서에 세부사항 지원 신청

- ④ (담당부서)** 신청사항 승인여부 검토 및 결정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세관	02-510-1375	seoulfta@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인천세관	032-452-3172	incheo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3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2	danielak@korea.kr
평택세관	031-8054-7169	ptfta@korea.kr

처리기간 : 5일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지원분야		☐ 납부기한연장 ☐ 분할납부				
지원대상		중소제조기업, 피해기업 등 지원대상 유형 작성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신청내용						
신고일자	수입신고번호	규격	수량	가격	세액	고지번호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사유		* 별지에 작성 가능				
연장받고자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납부기한			금액	
1회		. . .				
2회		. . .				
3회		. . .				
4회		. . .				
5회		. . .				
6회		. . .				
관세법 제10조·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